

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3가단23829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동그라미

2. A

3. B

4. C

변론 종결2015. 9. 8. (피고 C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 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5. 10.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28,233원 및 그 중 76,540,353원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3.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7. 16. 접수 제29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이하 '피고 동그라미'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9. 6. 17. 원고와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후 보증금액은 76,95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6. 14.로 각 변경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를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였다.

나. 피고 동그라미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 피고 B는 피고 동그라미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동그라미는 위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6. 15.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1.

8.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76,950,000원 및 이자 1,902,730원에서 2,312,377원을 차감한 76,540,353원(= 76,950,000원 + 1,902,730원 - 2,312,3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2013. 6. 15.부터 2013. 11. 7.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461,700원이고,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법적절차비용은 326,180원이다.

[인정근거]

- 피고 동그라미, 피고 A, 피고 B: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동그라미, 피고 A,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그라미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A,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28,233원(= 대위변제금 76,540,353원 + 추가보증료 461,700원 + 법적절차비용 326,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6,540,3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1.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C)

가. 인정사실

-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3. 7.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7. 16. 접수 제29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4. 5. 4. 접수 제17017호로 채권최고액 67,6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4)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50123호로 채권최고액 31,8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7. 1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B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지인인 피고 A의 처 피고 B에게 2012. 6.경부터 생활비로 7,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밖에 없어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C은 지인인 피고 A과 그의 처 피고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현대캐피탈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B는 2013. 5. 5. 현대캐피탈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만기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이 더 유리해지는 불공평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성준

별지